

HII 청첩, Bravo! 관세청



# 관 세 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른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및 목록몽관 기준금액 상향 통보

1.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-181('15.10.30) 호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-6964('15.10.30)호와 관련입니다.

2. 「관세법」 제94조제4호에 따른 관세가 면세되는 초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소액물품 및 「관세법」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의 특송품과 관련하여 기존 금액을 각각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(화)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,

3. 해당 세관장은 각 특송업체 및 관세사에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시어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가. (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한도)

(현행) 초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 → (개정)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

나. (목록몽관 기준금액) 100

(현행)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 → (개정)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

다. (시행시기) '15.12.01(화) 수입신고(몽관목록 제출) 분부터 적용. 끝.

## 관 세 청



수신자 인천공항세관장(특송몽관1과장), 인천공항세관장(특송몽관2과장), 인천공항세관장(특송몽관3과장), 인천공항세관장(특송몽관4과장),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, 김포국제공항국제우편세관장, 부산국제우편세관장, 인천세관장(이사화물과장)

관세행정관 강승현      ★행정사무관 출장      특수몽관과장 전결 2015. 11. 30.      유명환

협조자

시행 특수몽관과-4345 (2015. 11. 30.)      접수 특수몽관1과-5958 (2015. 11. 30.)

우 35702      대전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, 관세청 특수몽관과 / <http://www.customs.go.kr>

전화번호 042-481-7854      팩스번호 042-481-7819 / [rhidel@customs.go.kr](mailto:rhidel@customs.go.kr) / 대국민 공개

공공정보의 개방·공유로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